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01
----------	-----

2025. 4. 30.(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4월 22일

-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장기봉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사유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복지지원을 위해 존속 기한이 만료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안 제2조)
- 기금의 용도(안 제3조 ~ 제6조)
-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7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안 제8조)
-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복지 지원을 위해 존속 기한이 만료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기존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01년 2월 9일 제정)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 또한 기존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그 동안 사회복지기금에 포함하여 관리해 왔던 「재해구호법」에 따른 법정 기금인 '재해구호기금'을 그 특성과 목적에 맞도록 사회복지기금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함.

나.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2조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재원에 대해 규정함.
 - 국고보조금, 충청북도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을 기금 조성 재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및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임.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및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함. 특히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자격과 함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발 절차 및 장학금 지급의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해,
 - 계정 구분, 도금고 예치, 여유자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사회복지기금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한 각각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포괄기금의 성격으로, 계정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 또한 여유자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도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
- 제8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본 조례안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심의운용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어 위원회 기능상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9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 안 제10조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 보고서 작성 및 이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
- 안 제11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것임.

- 본 기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한 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
- 부칙 제2조는, 2001년 2월 9일 제정되었다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존속기한이 만료된 경우, 별도의 폐지조치가 없더라도 폐지된 것으로 볼 수있지만, 부칙에 따른 폐지 절차를 통해 도민이 폐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복지 지원을 위해 존속 기한이 만료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되었고, 조례안 예고 등 입법 절차를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고보조금 및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 지원사업
2.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3.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제4조(노인복지 지원사업)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 지원사업의 세부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교육과 취미활동 지원
2. 노인단체 사업의 지원

3.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육성

4.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제3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의 세부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권익증진

2.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재활

3. 장애인단체 사업의 지원

4.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

②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기금운용의 수익금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중에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심의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선발 하되 선발요령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장학생 본인이 다른 시·도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할 때
4. 보호자가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⑤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의 용도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심의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복지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생활보장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생활보장업무 담당 팀장

제10조(운용계획과 결산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2001년 2월 9일 제정 제2639호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이하 “포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목적: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 사업내용
 - (노인복지기금) 노인지도자 대학 운영 지원
 -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 사회참여 및 인식개선 사업 지원
 -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장학금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3. 관련조문

- 안 제3조(기금의 용도)
 - 노인복지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세입 : 2025년도 수입 예상내역을 기준으로 작성
- 세출 : 2025년도 사업비 편성 내역을 기준으로 작성
- 산출 근거

(노인복지기금)

- 노인지도자 대학 운영 사업비 : 23,000천원

(장애인복지기금)

- 장애인 합동결혼식(예식비, 피로연, 신혼여행비) : 10,000천원
- 농아인의 날 기념행사(중식비, 행사운영비) : 10,000천원
-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 사업 : 20,000천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 장학금 600천원 × 30명 = 18,000천원

나. 추계 결과

- 기금운용 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됨

다. 재원조달방안 : 사회복지기금(도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